특 허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22허4628 등록취소(상)

원 고 주식회사 A

대표자 사내이사 B

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

담당변리사 원영호

피 고 주식회사 C

송달장소

대표이사 D

변 론 종 결 2023. 4. 6.

판 결 선 고 2023. 5. 11.

주 문

- 1. 특허심판원이 2022. 7. 1. 2021당5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가.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
 - 1) 등록번호/ 출원일/ 등록일: 제337462호/ 2015. 2. 5./ 2015. 11. 9.

2) 구성: **FIKA**

3) 지정서비스업: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주방용품 소매업, 과자류 소매업, 문방구판매대행업, 서적구매대행업, 식기 소매업, 커피 및 코코아 도매업

나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
- 1) 피고는 2021. 2. 26. 특허심판원에 "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제35류의 '식기 소매업, 주방용품 소매업'(이하 '쟁점 지정서비스업'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상표권자,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, 구 상표법(2016. 2. 29.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쟁점 지정서비스업 부분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."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.
- 2)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598호로 심리한 다음, 2022. 7. 1. "원고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쟁점 지정서비스업이나 이와

동일성이 있는 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"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(이하 '이 사건 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【인정 근거】갑 제1, 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

가. 자백간주

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, 원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실은 피고 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).

- 1) 원고는 2014. 12. 24. 서울 E구 F(G동, H동)에 커피 및 간식과 함께 머그컵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(이하 '이 사건 H 사업장'이라 한다)을 개업하였는데, 해당 사업장에는 '라는 표장이 표시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, 텀블러 등을 판매·전시하는 진열대에는 '라는 표장이 표시된 안내문이 놓여 있다.
- 2) 원고는 2017. 12. 20. 서울 I구 J(K동, L백화점)에 커피 및 간식과 함께 머그컵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(이하 '이 사건 K동 사업장'이라 한다)을 개업하였는데, 해당 사업장에는 'FIKA'라는 표장이 표시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.
- 3) 원고는 이 사건 H 사업장에서 2019. 1. 2.부터 2020. 8. 4.까지 96차례에 걸쳐 머그컵과 텀블러 등을 판매하였고, 이 사건 K동 사업장에서 2019. 1. 9.부터 2020. 10. 24.까지 19차례에 걸쳐 머그컵과 텀블러 등을 판매하였다.

나. 판단

- 1)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·정가표·거래서류·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(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후3080 판결 등 참조).
- 2) 앞서 자백간주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원고가이 사건 심판청구일(2021. 2. 26.)로부터 3년 이내 기간 동안 이 사건 H 및 K동 사업장에서 식기 또는 주방용품에 속하는1) 머그컵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간판과 안내문등에 실사용서비스표로서 ' ' 등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

다. 해당 실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'**FIKA**'의 색상만을 단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, 해당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변형 사용에 불과하다.

3)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하여 쟁점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,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쟁점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.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.

3. 결론

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형근

¹⁾ 구 상표법 시행규칙(2015, 12, 30, 산업통상자원부렁 제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별표 2 2.가.2)차) 및 별표 1 2.서.2) 참조

판사 임경옥

판사 윤재필